

I 지방세(시세) 비과세·감면 현황 개요

1. 비과세·감면 총괄표

(단위: 원, %)

구분	'21년(결산)	'22년(결산)	증감액
비과세·감면액(A)	11,815,730,420	12,539,559,980	723,829,560
비과세	9,391,058,770	10,269,050,620	877,991,850
감면	2,424,671,650	2,270,509,360	(154,162,290)
지방세 징수액(B)	68,854,257,910	76,361,627,380	7,507,369,470
비과세·감면율(A/A+B)	14.6	14.1	0.4

2. 기능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원, %)

분야	'21년(결산)	'22년(결산)	증감액
총계	11,815,730,420	12,539,559,980	723,829,560
1 일반공공행정	5,434,032,250	5,938,448,760	504,416,510
2 공공질서 및 안전	289,447,270	144,184,940	(145,262,330)
3 교육	272,768,600	283,311,030	10,542,430
4 문화 및 관광	270,342,130	291,196,900	20,854,770
5 환경보호	29,500	27,500	(2,000)
6 사회복지	550,412,990	622,457,010	72,044,020
7 보건	2,455,990	2,522,190	66,200
8 농림해양수산	360,597,440	382,875,800	22,278,360
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40,618,080	48,404,410	7,786,330
10 교통 및 물류	1,921,290	1,468,520	(452,770)
11 국토 및 지역개발	722,912,920	600,238,740	(122,674,180)
12 국가	3,843,034,020	4,184,453,970	341,419,950
13 기타	27,157,940	39,970,210	12,812,270

3.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원, %)

분 야	'21년(결산)	'22년(결산)	증감액
총 계	11,815,730,420	12,539,559,980	723,829,560
보통세	11,815,730,420	12,539,559,980	723,829,560
취득세	-	-	-
등록면허세	-	-	-
레저세	-	-	-
지방소비세	-	-	-
주민세	47,787,900	117,528,500	69,740,600
재산세	11,219,319,200	11,884,533,020	665,213,820
자동차세	548,623,320	537,498,460	(11,124,860)
지방소득세	-	-	-
담배소비세	-	-	-
목적세	-	-	-
지역자원시설세	-	-	-
지방교육세	-	-	-

4. 비과세·감면액 주요 증감사유별 분석

(단위: 원)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감면유형)	지방세지출액		
		'21년 결산	'22년 결산	증 감 액
	총 계	11,815,730,420	12,539,559,980	723,829,560
1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4,688,883,780	5,154,546,200	465,662,420
2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 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6,144,320	7,017,040	872,720
3	주민공동체에 대한 비과세	45,969,090	49,720,610	3,751,520
4	사유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묘지에 대한 비과세	664,300,710	713,957,460	49,656,750
5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28,734,350	13,207,450	(15,526,900)
6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289,447,270	144,184,940	(145,262,330)
7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133,338,100	136,254,730	2,916,630
8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139,430,500	147,056,300	7,625,800
9	종교·제사단체에 대한 과세특례	267,567,900	288,182,720	20,614,82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감면유형)	지 방 세 지 출 액		
		'21년 결산	'22년 결산	증 감 액
10	문화 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741,010	771,830	30,820
11	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33,220	2,242,350	209,130
12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27,060	25,190	(1,870)
13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대한 감면	2,440	2,310	(130)
14	장애인에 대한 감면	300,621,810	273,251,620	(27,370,190)
15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24,365,200	41,690,060	4,361,630
16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7,892,060	26,320,050	1,954,850
17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50,122,080	10,039,060	2,147,000
18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127,394,510	46,959,370	(3,162,710)
19	주택담보노후연금보중에 대한 감면	2,688,900	220,715,070	93,320,560
20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비과세	37,328,430	3,481,780	792,880
21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2,455,990	2,522,190	66,200
22	농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15,267,070	84,484,060	69,216,990
23	한국농촌공사의 농업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31,170,140	26,088,270	(5,081,870)
24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60,607,660	63,839,570	3,231,910
25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13,503,480	15,049,020	1,545,540
26	어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53,413,120	78,560	(53,334,560)
27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감면	15,018,030	16,764,880	1,746,850
28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162,566,200	170,595,780	8,029,580
29	농어촌주택에 대한 감면	9,051,740	5,975,660	(3,076,080)
30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	4,649,390	10,347,570	5,698,18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감면유형)	지 방 세 지 출 액		
		'21년 결산	'22년 결산	증 감 액
31	산업기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50,000	50,000	-
32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580,980	649,830	68,850
33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감면	19,090	19,230	140
34	법인,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2,941,340	3,306,330	364,990
35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32,377,280	34,031,450	1,654,170
36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1,398,330	1,468,520	70,190
37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522,960	-	(522,960)
38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74,114,540	81,988,450	7,873,910
39	한국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596,870	624,110	27,240
40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605,058,720	474,103,770	(130,954,950)
4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22,527,100	23,665,830	1,138,730
4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	20,615,690	19,856,580	(759,110)
43	국가에 대한 비과세	3,842,022,790	4,183,544,750	341,521,960
44	국가가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1,011,230	909,220	(102,010)
45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과세특례	18,944,460	628,470	476,420
46	임시용 건축물 등에 대한 비과세	152,050	20,379,100	1,434,640
47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803,600	828,450	24,850
48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2,629,980	2,762,650	132,670
49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4,627,850	15,371,540	10,743,690

II 지방세(시세) 비과세·감면 항목별 세부내역

1. 일반 공공행정

연번	지방세 지출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2년(결산)
일반공공행정		합 계	5,938,448,760
1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대한·주민·재산·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 9①, § 26①, § 77①1호, § 109①1호, § 145①1호, § 145②) -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경호, 경비, 교통순찰, 소방, 환자수송, 청소, 오물수거와 도로공사 등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 1261·2호)	소 계	5,154,546,200
		주 민 세	50,000
		재 산 세	5,149,392,060
		자 동 차 세	5,104,140
2	지방자치단체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재산에 대한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 조합이 1년이상 공용·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비과세(지방세법 § 109②, § 145②)	소 계	7,017,040
		재 산 세	7,017,040
3	주민공동체에 대한 과세특례 - 마을회등주민공동체의주민공동소유부동산등에대한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면제(지방세법 § 26②4호 지방세특례제한법 § 90①·②)	소 계	49,720,610
		주 민 세	200,000
		재 산 세	49,520,610
4	사유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에 대한 비과세 -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 109③1호, § 145②)	소 계	713,957,460
		재 산 세	713,957,460
5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지방공사·공단등에대하여취득·재산세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85의2①②) - 지방자치단체가자본금및출연하여설립한주식회사, 재단법인에 대한취득·재산세감면(50%)(지방세특례제한법 § 85의2③)	소 계	13,207,450
		재 산 세	13,207,450

2. 공공질서 및 안전

연번	지방세 지출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원)	
		세 목	'22년(결산)
공공질서 및 안전		합 계	144,184,940
6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감면 -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개수 또는 대체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레저·주민·재산·자동차·지방소득·담배소비·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4④, §92① 1호, §92②, §92③) - 소멸 멸실된 자동차에 대한 상속 취득(지방세법 §9⑦)	소 계	144,184,940
		재 산 세	628,700
		자 동 차 세	143,556,240

3. 교육

연번	지방세 지출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원)	
		세 목	'22년(결산)
교육		합 계	283,311,030
7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109① 1호, §145① 1호, §145②)	소 계	136,254,730
		주 민 세	50,000
		재 산 세	136,204,730
8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1①, §41②, §41③, §41⑤) - 학교의 기숙사용 부동산 및 학생들의 실험·실습용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선박에 대하여 주민·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2①, §42②) -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기부자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무상사용기간 동안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1⑥) -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에 대한 재산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1⑦) -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9)	소 계	147,056,300
		주 민 세	300,000
		재 산 세	146,756,300

4. 문화 및 관광

연번	지방세 지출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원)	
		세 목	'22년(결산)
문화 및 관광		합 계	291,196,900
9	종교·제사단체에 대한 감면 - 종교·제사 목적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주민·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0①, §50②, §50③, §50⑤, §50⑥) - 종교재단의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8④)	소 계	288,182,720
		주 민 세	800,000
		재 산 세	287,382,720
10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예술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2①) -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학관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4조의2)	소 계	771,830
		재 산 세	771,830
11	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문화유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인의 고유업무용 직접 사용 부동산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3)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5①)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5②) -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내 부동산에 대한 감면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소 계	2,242,350
		재 산 세	2,242,350

5. 환경

연번	지방세 지출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원)	
		세 목	'22년(결산)
환경		합 계	27,500
12	환경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재활용시설, 기술개발지원등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47)	소 계	25,190
		재 산 세	25,190
13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대한 감면 - 해양오염방제 및 해양환경개선 등의 사업용 부동산과 해양 오염방제용 및 해양환경관리용으로 취득하는 선박의 재산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 49)	소 계	2,310
		재 산 세	2,310

6. 사회복지

연번	지방세 지출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원)	
		세 목	'22년(결산)
사회 복지		합 계	622,457,010
14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장애등급 1~3급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자동차세를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 17①) - 시각장애(4급)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자동차세 면제(조례)	소 계	273,251,620
		자 동 차 세	273,251,620
15	사회복지법인·시설·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 사회복지법인,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 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대하여 주민·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22①, § 22②, § 22③, § 22⑤) - 사회적기업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 재산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 22의4)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 22⑥)	소 계	41,690,060
		주 민 세	5,231,250
		재 산 세	36,458,810

16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19)	소 계	26,320,050
		재산세	26,320,050
17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노인복지시설 및 직접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20 1호) - 경로당용 부동산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20 1호) - 양로시설, 경로당 외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20 2호)	소 계	10,039,060
		재산세	10,039,060
18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국가유공자 등 단체에 대한 주민세 면제, 부동산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29②, § 29③) - 국가유공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의 자동차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29④)	소 계	46,959,370
		재산세	515,540
		자동차세	46,443,830
19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임대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31①·②·④)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31⑥)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 임대 목적으로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목적으로 직접사용할 경우 재산세를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31의3)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31의4)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목적으로 취득 소유하는 소규모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32①)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연체하는 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해당 연체자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57의4)	소 계	220,715,070
		재산세	220,715,070

20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감면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주택 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5②) - 연금방식으로 생활자금 등을 지급받기 위한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한 사람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25%)(지방세특례제한법 §35③) -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6억원 이하 100%)(지방세특례제한법 §35의2)	소 계	3,481,780
		재 산 세	3,481,780

7. 보건

연번	지방세 지출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원)	
		세 목	`22년(결산)
보건		합 계	2,522,190
21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의료법인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38①) - 지방의료원에 대한 재산세 7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38③)	소 계	2,522,190
		재 산 세	2,522,190

8. 농림해양수산

연번	지방세 지출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원)	
		세 목	`22년(결산)
농림·해양·수산		합 계	382,875,800
22	농업인에 대한 감면 - 농기계류 관정시설에 대한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 - 농어업인이 영농,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원분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0②) -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조특법 §106의2① 1호)	소 계	84,484,060
		주 민 세	84,479,250
		재 산 세	4,810

23	한국농촌공사의 농업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매매사업 등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과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대하여 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 13② 1호) -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13② 1의2호) - 경영회생 지원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13② 2호) - 생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무상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13③) 	소 계	26,088,270
		재산세	26,088,270
24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11②) 	소 계	63,839,570
		재산세	63,839,570
25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임야에 대한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보호구역 및 채종림, 시험림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지방세법 § 109③ 2호) 	소 계	15,049,020
		재산세	15,049,020
26	어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9②) - 어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종업원·재산)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10②) -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조특법 § 106의2① 1호) 	소 계	78,560
		재산세	78,560
27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법인의 영어·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12①) 	소 계	16,764,880
		재산세	16,764,880
28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의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14①) - 농협·수협·산림조합·염연초생산협동조합의 조합에 대하여 주민세 50% 감면,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14③, § 14④) 	소 계	170,595,780
		재산세	170,595,780
29	농어촌주택에 대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주택을 개량하는 거주자가 취득하는 150㎡이하 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16) 	소 계	5,975,660
		재산세	5,975,660

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연번	지방세 지출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원)	
		세 목	'22년(결산)
	산업 및 중소기업	합 계	48,404,410
30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 -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3년간 재산세 면제하고 그다음 2년간 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3②) -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0③ 1호)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등이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10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0③ 1의2호) -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직접 사용 목적 최초 취득 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9③)	소 계	10,347,570
		재 산 세	10,347,570
31	산업기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산학협력단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7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2③) -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과학기술진흥단체의 고유업무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5①)	소 계	50,000
		주 민 세	50,000
32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중견기업, 대기업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35% 경감(신성장동력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4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6①·②) -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60% 경감(신성장동력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7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6③) - 시험분석·연구용 담배, 수출상당 견본용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 면제(지방세법 §54① 6·7호)	소 계	649,830
		재 산 세	649,830

33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감면 -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거나,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의3) (조례로 15년 범위내 감면 확대 가능)	소 계	19,230
		재 산 세	19,230
34	법인·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 본점 및 주사무소를 대도시 외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해 법인등기 및 사업용 부동산 재산세 5년간 100%, 그다음 3년간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9) - 공장을 대도시 외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재산세 5년간 면제, 그다음 3년간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80)	소 계	3,306,330
		재 산 세	3,306,330
35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또는 자동차?건설기계 매매업자가 등록한 매매용 자동차, 건설기계에 대해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3호) - 자동차, 건설기계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8①)	소 계	34,031,450
		자 동 차 세	34,031,450

10. 교통 및 물류

연번	지방세 지출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원)	
		세 목	`22년(결산)
농림·해양·수산		합 계	1,468,520
36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철도차량,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3②) -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역사 개발사업용 부동산 및 철도차량 등에 대하여 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3③)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3⑤)	소 계	1,468,520
		재 산 세	1,468,520

11. 국토 및 지역개발

연번	지방세 지출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원)	
		세 목	'22년(결산)
국토 및 지역개발		합 계	600,238,740
37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지구 내 부동산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등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6②)	소 계	81,988,450
		재산세	81,988,450
38	한국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 한국수자원공사의 분양 목적 단지조성용 사업지구 내 부동산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등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7②)	소 계	624,110
		재산세	624,110
39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 산업단지조성용 부동산 조성공사 중 토지 재산세 35% 감면(수도권외 재산세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①) -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조성 후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재산세 35% 감면(수도권외 재산세 60% 감면), 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 재산세 5년간 35% 감면(수도권외 재산세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②) -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조성 후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재산세 35% 감면(수도권외 재산세 60% 감면), 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 재산세 5년간 35% 감면(수도권외 재산세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③) - 산업단지, 유지지역, 산업기술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재산세 35% 감면(수도권외 재산세 75%) -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분양·임대 및 매각 사업, 후생복지·교육사업 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재산세 50% 감면(수도권외 7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⑥) - 농공단지 내 휴·폐업 공장에 대체입주시 재산세 50% 감면(조례)	소 계	474,103,770
		재산세	474,103,770

40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 재산세 5년간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81①②)	소 계	23,665,830
		재산세	23,665,830
4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 -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부동산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84①) - 공공시설용 토지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 재산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84②) - 철도보호지구 내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4③)	소 계	19,856,580
		재산세	19,856,580

12. 국가

연번	지방세 지출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원)	
		세 목	'22년(결산)
국토 및 지역개발		합 계	4,184,453,970
42	국가에 대한 비과세 - 국가에 대한 주민·재산·지방소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90, §109①, §145① 1호) - 국가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및 소방, 환자수송·청소·오물수거와 도로공사, 우편·전파관리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지방세법 §126)	소 계	4,183,544,750
		주민세	23,050,000
		재산세	4,149,579,550
		자동차세	10,915,200
43	국가가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109① 2호, §109②, §145②)	소 계	909,220
		재산세	909,220

13. 기타

연번	지방세 지출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원)	
		세 목	'22년(결산)
국토 및 지역개발		합 계	39,970,210
44	임시용 건축물 등에 대한 비과세 - 임시 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지방세법 §9⑤, §109③ 3호, §109③ 5호, §145②) - 당해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지방세법 §109③ 5호, 지방세법 시행령 §137②)	소 계	628,470
		재 산 세	628,470
45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과세특례 - 폐차된 자동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3호)	소 계	20,379,100
		자 동 차 세	20,379,100
46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 별정우체국에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주민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2②)	소 계	828,450
		재 산 세	828,450
47	신협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 신협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가 신용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7① 1호, §87② 1호) - 신협협동조합중앙회 및 새마을금고가 복지사업,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조합원의 교육 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7① 2호, §87② 2호)	소 계	2,762,650
		재 산 세	2,762,650
48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 §92의2)	소 계	15,371,540
		주 민 세	3,318,000
		재 산 세	8,236,660
		자 동 차 세	3,816,880